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88,975,469	80,669,264
일반회계	2,451,491,973	73,544,759
특별회계	237,483,496	7,124,505
공기업특별회계	189,838,896	5,695,16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813,438	2,514,4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6,025,458	3,180,764
기타특별회계	47,644,600	1,429,338
주택사업특별회계	101,000	3,0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804,473	414,13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19,000	21,57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43,868	103,316
교통사업특별회계	26,603,265	798,098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	150
수질개선특별회계	2,892,394	86,7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20,3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4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